

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)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. 8.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기간을 완화하기 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 규칙에서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